

—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1월 10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1월 16일

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신 혜 련

나. 제안이유

-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구미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병원의 업무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(안 제3조)
- 병원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)
 - 효율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.
 - 병원운영은 독립채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.
 -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업무를 대행할 수

있도록 규정함.

- 공유재산의 사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손·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(안 제5조)
- 의료수가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하되,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항목은 위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.(안 제6조)
- 수탁자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며 수탁재산을 신축·개축·변경시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)
- 회계 및 결산(안 제8조)
 - 병원운영의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
 - 매년 정부회계년도 20일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
 -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2개월전에 제출
- 보고 및 감독(안 제9조)
 -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운영에 관한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
 - 매2년마다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
-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, 협약사항 위반,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는 위수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 135조
- 노인복지법 제34조, 제35조
- 의료법 제30조 제2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치매 및 노인질환 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되는 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며,
- 주요내용은 병원의 업무관장 범위, 위탁자격 기준 및 위탁기간, 병원 운영방법, 공유재산의 사용, 의료수가, 수탁자의 의무, 회계 및 결산 보고 및 감독, 위·수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조례안 제4조 제2항중 “다만,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.”의 단서내용에 변경자에 대한 모집방법은 있으나 “수탁자 신규 선정”시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함이 타당함.
- 안 제8조 제2항중 수탁자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이 매년 정부회계 연도 개시 20일전까지로 규정한 것은 시장이 사업 계획수립의 타당성 검토 및 보완요구시 충분한 사전검토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됨.
- 본 조례안과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05. 7. 14 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